

- 조직개편 등에 따른 -  
**일제정비 사규 공포문**

2026. 4.



**목 차**

1. 보수규정 .....	4
2. 여비규정 .....	7
3. 안전보건관리규정 .....	11
4. 직제규정 .....	15
5. 직제규정 시행내규 .....	17
6. 사무전결처리내규 .....	19

## <공통사항>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직제규정(규정 제724호, '26.2.27. 공포·시행) 및 직제규정 시행내규(내규 제674호, '26.2.27. 공포·시행)의 개정에 따른 기구 및 직위명칭 변경
- 나. 법령, 정부·인천광역시 방침, 정관 및 상위 사규의 변경으로 인한 제명, 인용조문 및 개정내용 반영
- 다. 단순 자구수정, 별표 및 서식개정 등 내용이 경미한 사항
-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순화대상 법률용어 및 문장

### 2. 사전절차

- 가. 홈페이지 사전게시 및 입안예고 생략
  - 1) 사규 입안예고제 시행내규 제4조,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
- 나.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1) 사규관리규정 제13조
- 다. 이사회 부의 생략
  - 1) 사규관리규정 제4조의2
- 라. 조직개편 등에 따른 사규 일제정비 계획(안)[법무실-642(2026. 3. 4.)호]

보수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도시공사 사장 류 윤 기

2026년 4월 8일

### 규정 제727호

## 보수규정 일부개정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의 보수는 「지방공기업법」,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조례 및 정관,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무기계약직, 계약직 및 일용직의 경우에는 업무보조원 및 시설관리원 관리규정, 계약직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 및 일용직 취업규정에 따른다.

**제31조의3(업무대행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출산전후휴가
2. ~ 4. (생략)

별표 2-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2]

수당 지급 기준표

구 분	지급률 또는 지급금액	지급대상
자격기술 수 당 ~ 대우수당	(현행과 같음)	
업 무대행 수 당	월 20만원 × 1/업무대행 지정 인원수	병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
	월 20만원 × 실제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 1/업무대행 지정 인원수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의 업무 대행자로 지정된 직원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비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도시공사 사장 류 윤 기

2026년 4월 8일

규정 제728호

여비규정 일부개정

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인천도시공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비”란 출장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택시요금 등 근거리교통비, 주차료,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를 말한다.
2. “숙박비”란 출장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를 말한다.
3. “교통비”란 출장 목적지로 이동하는 교통수단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서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을 말한다.
4. (생략)

제3조(여비의 계산) ① (생략)

②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滞在)하는 직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

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6조(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고문, 자문위원 기타 공사 직원 이외의 자가 공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여비일수의 계산) ① 여비일수는 업무에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다만, 업무로 출장지에 체재하는 일수 및 출장도중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업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포함한다.

② 출장도중 선로변경이나 신분의 변동에 의하여 여비의 계산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9조(출장여비의 지급) ① ~ ⑤ (생략)

⑥ 일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사의 업무용 차량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⑦ 식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식사를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식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수로출장과 항공출장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18조의2(일비의 감액) 일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사의 업무용 차량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내여비 기준표

(단위 : 원)

구분	교통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임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Business)	실비	25,000	실비	25,000
직원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Economy)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밖의 지역 70,000원)	25,000

- 비고 : 1. 국내 자동차운임 중 버스운임실비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 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 한다.
2. 항공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되, 별표 2의 기준에 따르며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 의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교통비 대신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을 따른다.
4. 숙박비란의 실비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하며 공동숙박 등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5. 공사의 업무용 차량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의 교통수단으로 유료고속도로를 운행할 경우에는 그 통행료만 실비정산(카드사용, 증빙자료)하여 지급하며, 주차료 등의 발생으로 실비가 일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도시공사 사장 류 윤 기

2026년 4월 8일

규정 제729호

##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 ① ~ ③ (생략)

④ 공사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의 장비·인력 등 필수요건을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에 우선 반영하여 계약 상대방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을 갖추었는지 사전에 평가하고 적절한 수급인을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용과 기간 산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자) ① 사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담당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제11조(보건관리자) ① 사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담당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16조(안전보건경영위원회) ① 공사는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 해제 시까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사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의 장, 소속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32조(안전검사 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안전검사)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이하 “자율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생략)

제40조(휴게시설의 설치) ① (생략)

②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에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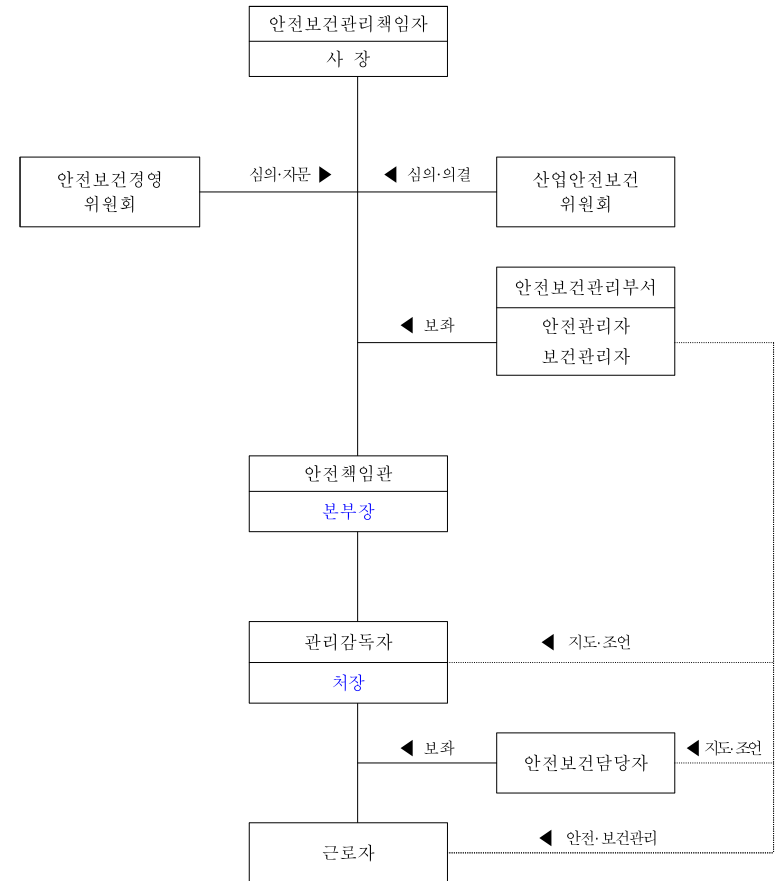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보건관리 조직(제7조 관련)



직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도시공사 사장 류 윤 기

2026년 4월 8일

규정 제730호

### 직제규정 일부개정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 업무분장표(제13조 관련)

분부별	업무분장 내용
경영혁신본부 ~ 자산관리본부	(생략)
도시개발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택지개발사업 총괄</li> <li>· 단지·택지개발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전략, 실행방안 수립</li> <li>· 신도시(검단, 계양)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li> <li>· 스마트시티, 문화·환경 업무</li> <li>· 전사 사업에 대한 국가유산, 기계, 전기, 정보통신, 환경, 조정, 소방, 경관 등 기술 업무</li> <li>·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등) 발전 사업 발굴, 추진전략 수립·시행</li> <li>· 신재생에너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li> <li>· 전사 AI 전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총괄</li> </ul>
주거복지본부 ~ 감사	(생략)

직제규정 시행내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도시공사 사장 류 윤 기

2026년 4월 8일

내규 제676호

### 직제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직제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업무분장(제5조 관련)

경영혁신본부 ~ 자산관리본부 (생략)

도시개발본부

처·팀명	업무분장내용
도시기획처 ~ 신도시사업처	(생략)
기술지원처 AI기술총괄팀 조경환경팀 기전기술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개발(신도시, 택지, 산단), 주택건설, 도시재생[이하 “개발사업”]에 대한 조경, 전기, 통신, 환경, 기계, 소방 [이하 “기술분야”] 및 국가유산의 지원</li> <li>2. 개발사업 지구지정,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기술 분야 및 국가유산 인허가(변경포함) 지원</li> <li>3. 기술분야 및 국가유산 계획(변경 포함) 및 방침수립</li> <li>4. 기술분야 및 국가유산 관련 용역, 공사, 자재 시행계획 수립</li> <li>5. 기술분야 및 국가유산 관련 용역, 공사, 자재 발주 및 감독</li> <li>6. 기술분야 및 국가유산 용역, 공사, 자재의 공정, 안전, 품질 관리 감독</li> <li>7. ~ 10. (생략)</li> <li>11. 기술분야 및 국가유산 민원 처리</li> <li>12. 국가유산(사업후보지 사전조사, 지정국가유산 현상변경 심의지원, 민원 및 보존대책수립) 추진</li> <li>13. ~ 32. (생략)</li> </ol>

주거복지본부 ~ 감사 (생략)

사무전결처리내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도시공사 사장 류 윤 기

2026년 4월 8일

내규 제677호

## 사무전결처리내규 일부개정

사무전결처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전결권자 유고 시 대결 등) ① 전결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결권자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략)
  2. 처장의 전결사항은 처 내의 직제 순에 따른 팀장이 행한다.
  3. 팀장의 전결사항은 팀 내의 차하급자가 행한다.
- ② ~ ③ (생략)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사무전결처리사항(제5조 관련)

#### 1. 공통사무 (생략)

#### 2. 부서별 사무

가. 경영본부 (생략)

나. 자산관리본부

부서명	사무내용	결재권자			
		팀장	처장	본부장	사장
마케팅처 (토지판매팀) (자산관리팀) (주택판매팀)	1. ~ 25. (생략)				

부서명	사무내용	결재권자			
		팀장	처장	본부장	사장
부동산금융처 (부동산금융팀) (SPC사업팀)	1. (생략)				

부서명	사무내용	결재권자		
		단장	본부장	사장
AMC사업단	1. ~ 8. (생략)			

부서명	사무내용	결재권자		
		실장	본부장	사장
법무실	1. 소송업무 주관			
	가.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담당자 지명			
	1) 변호사 선임사건			

	(가) 변호사 보수 3000만원 초과				○
	(나) 변호사 보수 3000만원 이하			○	
	2) 직원수행사건			○	
	나. ~ 다. (생략)				
	2. ~ 11. (생략)				

다. 도시개발본부

부서명	사무내용	결재권자			
		팀장	처장	본부장	사장
도시기획처 (개발기획팀) (복합개발팀) (신재생에너지팀)	1. ~ 15. (생략)				

부서명	사무내용	결재권자			
		팀장	처장	본부장	사장
도시개발처	1. ~ 14. (생략)				

부서명	사무내용	결재권자			
		팀장	처장	본부장	사장
신도시사업처	1. ~ 17. (생략)				

부서명	사무내용	결재권자			
		팀장	처장	본부장	사장
기술지원처 (AI기술총괄팀) (조경환경팀) (기전기술팀)	1. 기술분야 각종 인·허가 업무 * 택지, 건축, 도시재생 분야 기계, 전기, 통신, 조경, 환경, 소방, 국가유산을 이하 “기술분야”라고 함		○		
	2. ~ 4. (생략)				

	5. 국가유산 관련 업무				
	가. 사업후보지 국가유산 조사		○		
	나. 국가유산 현상변경(유관기관 협의)		○		
	다. 국가유산 발굴조사 및 보존정비		○		
	라. 관련기관 협의 및 기타 경미한 사항	○			
	6. ~ 10. (생략)				
	11. 건축물 인증 업무				
	가.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등급, 홈 네트워크-건물등급 본(예비)인증		⊖		
	나.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예비)인증		⊖		
	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본(예비)인증		⊖		
	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본(예비)인증		⊖		
	11. ~ 18. (생략)				
	20.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 평가에 관한 업무				
	가. 평가업무 추진계획 수립(변경)				⊖
	나. 에너지 절약계획서 평가 및 결과회산		⊖		
	다. 기타 경미한 사항	⊖			

라. 주거복지본부

부서명	사무내용	결재권자			
		팀장	처장	본부장	사장
주거복지처 (주거복지기획팀) (매입임대사업팀) (전세임대사업팀) (건설임대공급팀)	1. ~ 13. (생략)				

부서명	사무내용	결재권자			
		팀장	처장	본부장	사장
시설관리처 (매입임대시설팀) (건설임대시설팀)	1. ~ 11. (생략)				

부서명	사무내용	결재권자			
		팀장	처장	본부장	사장
건축사업처 (건축기획팀) (건축사업팀) (건축설비팀)	1. ~ 7. (생략)				
	8. 소관사업 사업준공, 시설물 이관 및 하자보수				
	가. ~ 다. (생략)				
	라. 기술분야 지장이설물 업무 지원(내역 검토)	○			
	9. ~ 12. (현행과 같음)				
	13. 건축물 인증 업무				
	가. 주택성능등급 인증 및 취득 업무	○			
	나. 스마트 정보통신 건물등급 본(예비)인증		○		
	다.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예비)인증		○		
	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본(예비)인증		○		
	14. 건축물의 의장, 색채계획 수립 및 토탈 디자인에 한 업무			○	
	15. 소관사업 설계표준화 관련 지침 및 기준 등 제·개정		○		
	16. 市 등 정책 및 대행사업				
	가. 대행사업비관리		○		
	17. 소관사업 지구의 사용 및 관리	○			
	18.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 평가에 관한 업무				
	가. 평가업무 추진계획 수립(변경)				○
	나. 에너지 절약계획서 평가 및 결과회신		○		
다. 기타 경미한 사항	○				

부서명	사무내용	결재권자			
		팀장	센터장	본부장	사장
광역주거복지센터	1. ~ 8. (생략)				

마. 균형발전본부

부서명	사무내용	결재권자			
		팀장	처장	본부장	사장
도시균형처 (균형기획팀) (균형사업팀)	1. ~ 18. (생략)				

부서명	사무내용	결재권자			
		팀장	처장	본부장	사장
도시정비처	1. ~ 14. (생략)				

부서명	사무내용	결재권자			
		팀장	처장	본부장	사장
보상처 (보상총괄팀) (보상1팀) (보상2팀) (구월2보상팀)	1. ~ 7. (생략)				

바.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부서명	사무내용	결재권자			
		팀장	처장	센터장	사장
도시재생지원처 (재생기획팀) (재생혁신팀) (재생협력팀)	1. ~ 12. (생략)				

사. 감사

부서명	사무내용	결재권자			
		팀장	실장	감사	사장
감 사 실	1. ~ 11. (생 략)				

아. 안전관리실

부서명	사무내용	결재권자			
		팀장	실장		사장
안 전 관 리 실	1. ~ 20. (생 략)				

자. iH도시연구소

부서명	사무내용	결재권자			
		소장			사장
iH도시연구소	1. ~ 7. (생 략)				

차. 정보보안실

부서명	사무내용	결재권자			
		실장			사장
정 보 보 안 실	1. ~ 10. (생 략)				